

# 운 영 규 정

제정: 2012년 11월 24일  
1차 개정: 2014년 3월 8일  
2차 개정: 2015년 3월 7일  
3차 개정: 2016년 3월 12일  
4차 개정: 2017년 3월 11일  
5차 개정: 2018년 3월 3일  
6차 개정: 2023년 3월 4일  
7차 개정: 2024년 11월 1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농아청년 상호간의 연대와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문화적 참여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규정)**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세부규정을 둔다.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위원회
- 제5장 총회
- 제6장 문서관리
- 제7장 재원
-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9장 본회와의 관계
- 제10장 국제교류
- 제11장 보칙

**제3조(명칭)** 본회는 한국농아청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YOUTH (약칭 KADY)라 칭한다.

1. 한국농아청년회(약칭 : 한농청)
2. 서울농아청년회(약칭 : 서울농청)
3. 부산농아청년회(약칭 : 부산농청)
4. 대구농아청년회(약칭 : 대구농청)
5. 인천농아청년회(약칭 : 인천농청)
6. 광주농아청년회(약칭 : 광주농청)

7. 대전농아청년회(약칭 : 대전농청)
8. 경기농아청년회(약칭 : 경기농청)
9. 강원농아청년회(약칭 : 강원농청)
10. 충남농아청년회(약칭 : 충남농청)
11. 전북농아청년회(약칭 : 전북농청)
12. 경북농아청년회(약칭 : 경북농청)
13. 경남농아청년회(약칭 : 경남농청)
14. 제주농아청년회(약칭 : 제주농청)

**제4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한국농아인협회에 사무실을 두고 지방에 시·도 조직기구를 둘 수 있다.

1. 한국농아청년회 : 한국농아인협회
2. 서울농아청년회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3. 부산농아청년회 : 부산광역시농아인협회
4. 대구농아청년회 :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5. 인천농아청년회 :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6. 광주농아청년회 :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7. 대전농아청년회 :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
8. 경기농아청년회 : 경기도농아인협회
9. 강원농아청년회 : 강원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10. 충남농아청년회 : 충청남도농아인협회
11. 전북농아청년회 : 전북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12. 경북농아청년회 : 경상북도농아인협회
13. 경남농아청년회 : 경상남도농아인협회
14. 제주농아청년회 :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아청년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에 필요한 사업
2. 농아청년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농아청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사업
4. 시·도 청년회와 긴밀한 연대교류 지원 사업
5. 국제농아청년과의 국제교류 사업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회는 제5조에 규정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7조(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휴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본회의 회원은 청각장애를 가진 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단,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
  - 2) 정회원은 시·도 청년회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로 한다.
  - 3) 준회원은 시·도 청년회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3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단, 나이 기준을 시·도 청년회의 재량으로 한다.
  - 4) 휴면회원은 시·도 청년회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 5) 특별회원은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심의로 청년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인준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
2. 정회원 및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자격을 가진다.
3. 기존 정회원의 나이가 36세로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준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시·도 청년회 회장 및 대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휴면회원과 특별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본회의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회의 회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시·도 청년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요청에 따라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또는 탈퇴를 할 수 있다.

1.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회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가입신청서 1부
  - 2)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3) 초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3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1부  
(최근 3개월 이내)
  - 4)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3.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한 시·도 청년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비 운영)**

1. 본회에 가입 시 시·도 청년회에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입비 일반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시·도 청년회의 재량으로 한다.
3.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전출한 경우 연회비는 기존 시·도 청년회에 귀속한다.
4.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비 등을 환급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관리)**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가입신청서(한농청 소정양식)
  - 2) 탈퇴신청서(한농청 소정양식)
  - 3) 회원명부(한농청 소정양식)
  - 4) 개인정보 활용동의서(한농청 소정양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연회비 납부한 날로부터 매년 본회 총회까지 보존하고 이후 폐기한다. 단, 회원이 탈퇴할 경우 즉시 폐기 처분한다.)
2. 가입신청서는 가입한 날로부터 탈퇴 또는 본회 해산까지 영구 보존한다.
3.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초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는 가입한 날로부터 매년 본회 총회까지 보존하고 이후 폐기한다.
4. 시·도 청년회는 수시로 회원관리를 하여야 하고, 매년 본회에 연간회비 납부 실적 현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탈퇴 절차가 모두 완료된 회원의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 처분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권한 및 관계가 상실된다.

1. 본회를 탈퇴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제13조(포상)** 본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 시·도 청년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조직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때는 징계한다.
2. 자격정지 조치는 대상자에 따라 본회 이사회 또는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시·도 청년회의 경우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징계 대상자가 제명되는 경우 본회 이사회에 경중 여부를 논의하여 보고 및 의결을 통해 총회에 인준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절 이사회

**제15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무이사 : 1인
4. 시·도 이사 : 17인 이내
5. 분과이사 : 15인 이내
6. 감사 : 2인 이내

**제16조(이사회 임기)**

- 1. 본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 2년
  - 2) 부회장 : 2년
  - 3) 총무이사 : 2년
  - 4) 시·도이사 : 2년
  - 5) 분과이사 : 2년
  - 6) 감사 : 2년
- 2. 결원으로 인해 보궐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사임 또는 임기 만료로 인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다한다.

**제17조(이사회 해임)** 이사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 및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이사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 3. 본회의 업무에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 4. 이사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5. 총회에서 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6.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한 때
- 7.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때

**제18조(이사회 임무)**

-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이사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토의 의결하며 그 집행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 3. 분과 이사
  - 1) 서기이사는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2) 재정이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 업무들을 관장한다.
  - 3) 기획이사는 본회의 모든 행사 업무들을 관장한다.
  - 4) 홍보이사는 본회의 모든 홍보 업무들을 관장한다.
  - 5) 국제이사는 본회의 모든 국제 업무들을 관장한다.

- 6) 교육이사는 본회의 모든 교육 업무들을 관장한다.
- 7) 편집이사는 본회의 모든 영상 업무들을 관장한다.  
(단, 그 외에 필요할 경우 회장단 재량으로 추가 선임 할수 있다.)
- 4. 회장단 및 분과 이사는 시·도농아청년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문제가 발생함을 발견하는 때에는 감사하거나 조사하여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감사는 정기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6)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존하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7) 감사는 본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 대우)** 본회 이사회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20조(고문)**

- 1. 역대 회장은 고문이 된다.
- 2.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 3.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하고, 일자와 장소는 이사회에 정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의 재량으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 3. 운영규정 제60조, 제61조를 의결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 1) 운영규정 제60조에 따른 예산안
  - 2) 운영규정 제61조에 따른 결산서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4.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14일 전에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서면결의)**

1. 회장은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한다.

**제24조(이사회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재정 운영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모든 사항
4. 시·도 및 시군구 청년회 설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상벌에 관한 사항
8. 본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 위임장을 제출한다.
3. 시·도 청년회 회장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 회의록 및 의사록)**

1. 이사회에서 다루어진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촬영 녹화물은 영상파일로 저장매체에 보존하여야 한다.
2. 이사회회의 종료 후 회장과 출석한 이사에 한해 의사록에 서명한다.
3. 이사회 회의록은 2주 내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일자 시점으로 이사는 2주 내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 회의록 및 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다.

**제2절 시·도 청년회 임원회**

**제27조(임원회 구성)** 시·도 청년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임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이어야 한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1인
  - 3) 총무 : 1인
  - 4) 임원 : 15인 이내
  - 5) 감사 : 2인 이내
2. 결원으로 인해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원회 선출)**

1. 회장은 총회 전에 출마하여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부회장은 신입 회장이 지명한다.
3. 총무는 신입회장 및 부회장이 지명한다.
4. 시·도 청년회장은 해당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시·도 청년회 회장단 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시·도 청년회 정회원 및 준회원인 자
  - 2) 시·도 청년회 연회비 1년 이상 납부 의무를 준수한 자
  - 3) 시·도 청년회 임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6. 시·도 청년회 임원회 구성은 해당 시·도 청년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29조(임원회 임기)**

1. 시·도 청년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시·도 청년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는 본회 총회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다.

**제30조(임원회 임무)**

1. 회장은 시·도 청년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임원은 시·도 청년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분담에 참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시·도 청년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문제가 발생함을 발견하는 때에는 감사하거나 조사하여 이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감사는 정기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6)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존하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6.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퇴할 경우 보고 및 인수인계 30일 이내로 한다.

#### 제31조(고문)

1. 역대 회장은 고문이 된다.
2. 고문은 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임원회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임원회 성립)**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참가로 성립된다.

**제34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사항
2.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정 운영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장 위원회

**제35조(위원회 목적)** 본회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심의규정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후원위원회

4. 비상대책위원회
5.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6조(위원회 기능)

1. 심의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회: 본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3. 후원위원회: 본회의 사업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책위원회: 본회 회장단 유고 및 단체적 긴급사항 등

#### 제37조(위원회 자격)

1. 본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 사실이 인정되는 자
2. 이사회에서 이를 인정한 자

#### 제38조(위원회 구성과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이를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제39조(위원회 권한)

1. 심의규정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후원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후원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회장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제40조(위원회 임기 등)

1. 심의규정·자문·후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를 마쳤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비상상황이 해소되어 한국농아청년회 회장이 선출되면 해산한다.

## 제5장 총회

### 제1절 본회

#### 제41조(총회의 구분 및 구성)

1.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2조(총회의 소집)

1.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한국농아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전에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개최 3주 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시·도 청년회를 통해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 제45조(이사회 선출)

1.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 전에 출마하여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단, 부회장 출마가 없을 경우 신입 회장이 지명한다.
2. 총무이사는 신입 회장 및 부회장이 지명한다.
3. 본회 회장단 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해당 시·도 청년회 정회원인 자
  - 2) 해당 시·도 청년회 임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 3) 본회 이사 경력 2년 이상 및 이사회비 2년 이상 납부 의무를 준수한 자

4. 본회 분과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시·도 청년회 정회원인 자
  - 2) 해당 시·도 청년회 임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 3) 지원자가 없을 경우 회장단의 지명으로 한다.
5. 시·도 청년회장은 해당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46조(대의원의 구분 등)

1. 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 및 준회원이어야 한다.
2.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 대의원 : 본회 회장단 및 분과이사, 시·도 청년회 회장단
  - 2) 선출직 대의원 : 시·도 청년회 총회에서 선출된 정회원 및 준회원
3. 선출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당 3명을 해당 총회에서 투표 또는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제47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금지)**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인을 참가시킬 수 없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의결권, 선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총회의 기록보존)

1. 총회에서 다루어진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녹화물의 보존 기간은 4년으로 하며, 기간이 종료되면 본회 이사회에서 논의 후 삭제 처리한다.

## 제2절 시·도 청년회

#### 제49조(총회의 구분 및 구성)

1.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50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월~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가로 성립되지만, 그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

**제5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회 및 회원 1/2 이상이 제안한 사항
5.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53조(대의원의 배정 및 구분)** 대의원은 당연직 및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청년회의 당연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장단으로 한다.
2. 시·도 청년회의 선출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4. 임기 말의 총회 시, 새로 선출된 시·도 청년회 회장단은 총회 참관인으로 참가한다. 단,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제54조(대의원의 선출 등)**

1. 시·도 청년회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에서 선출한다.
  - 1)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한다.
  - 2) 선출직 대의원은 각 시·도 청년회 3명을 총회에서 투표 또는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선출직 대의원 입후보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선출직 대의원 입후보자를 유효할 수 있다.
3. 선출직 대의원 등록 인원이 미달 또는 사임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 및 감사는 해당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5조(대의원의 임기)**

1.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다음날로부터 2년 후의 본회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 후의 시·도 청년회 총회 전까지 한다.
3. 사임 또는 결원 등으로 인해 보궐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6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가하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등을 행사한다.

**제57조(총회의 기록보존)**

1. 총회에서 다루어진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녹화물의 보존 기간은 4년으로 하며, 기간이 종료되면 본회 이사회에서 논의 후 삭제 처리한다.

## 제6장 문서관리

**제58조(문서의 보존기간)**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와 관련된 문서 및 기타 후대 관심사가 될 만한 문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보존한다.

1. 발기인총회 회의록, 회계장부, 회원명부, 임원명부, 사진, 영상 등을 종이 문서와 문서 파일(PDF)로 보존하며 유효 및 보존 기간은 영구적으로 한다.
2.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회의록 등을 1차적으로 출력해서 보관하되, 보관 및 관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문서 파일(PDF)로 보존한다. 이 때, 유효 및 보존 기간은 6년으로 한다.

## 제7장 재원

**제59조(재정의 구분 및 관리)**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지원금
3. 후원금
4. 수익 사업금
5. 기타 수입금

**제6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본회 및 시·도청년회의 차기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이를 편성함으로 본회 이사회 및 시·도청년회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1. 본회 및 시·도 청년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0일 내에 감사를 필할 수 있도록 완료하여야 하며, 그 직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뒤 본회 이사회 또는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계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6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3조(적용범위)** 본회 및 시·도청년회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64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3명의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에서 추천을 받아 호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5. 본회 및 사·도 청년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집행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66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선거 결과 발표
2. 선거인 명부 검토
3. 투표표 관리
4. 선거록 작성 및 보고
5.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67조(의결정족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표결 시 가부동수는 부결 처리한다.

**제68조(경비부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본회 및 시·도 청년회 예산으로 전액 충당한다.

**제2절 입후보**

**제69조(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일은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선거공고 기간과 후보 등록 기간은 2주일로 한다.

**제70조(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 2) 시·도 청년회 회비 납부 증명서(1년) 1부
  - 3) 시·도 청년회 임원 경력 증명서(2년) 1부
  - 4) 본회 이사회 이사 경력 증명서(2년) 1부
2. 시·도 청년회장 입후보자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 2) 시·도 청년회 회비 납부 증명서(1년) 1부
  - 3) 시·도 청년회 임원 경력 증명서(1년) 1부
3. 선출직 대의원 입후보자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 2) 시·도 청년회 회비 납부 증명서(1년) 1부
4. 모든 입후보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매년 본회 총회까지 보존하고 이후 폐기한다. 단, 낙선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이후 즉시 폐기처분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입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 제71조(재등록)

1.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재등록 공고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의결하도록 한다.

**제72조(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절 투표와 개표

**제73조(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74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공지한 시간으로 한다.

#### 제75조(투표용지 등)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등록순서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76조(기표방법)**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지지하는 후보자 기표란에 무기명 비밀 기표를 하고, 단일후보일 경우에도 비밀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77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시한다.

**제78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2. 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3. 지정된 기표 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4.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는 투표지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결정한 투표지

#### 제79조(선거록 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 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선거록에는 대의원 수, 투표자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선거록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80조(당선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제4절 이의신청

**제81조(이의제기)**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선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2조(재선거)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장 본회와의 관계

**제83조(시·도 청년회 설립)** 본회는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40조과 제규정집 제2장 직제규정 제1조, 제6조에 의거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회 미설립지역에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 제84조(시·도 청년회 설립허가)

1. 시·도 청년회는 10인 이상의 회원(발기인)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해당 시·도 협회에 설립 허가를 요청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2. 설립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허가서(시·도 농아인협회) 1부
- 2) 준비위원회 구성 명단 1부
- 3) 발기인총회 동의서(10인 이상) 1부
- 4) 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제85조(의무 등)**

1.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시·도 청년회는 본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 청년회에 등록된 회원 수에 3천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총회 개최 전까지에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각 시·도 청년회에서 내부적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본회에 요청하여 해결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6조(시·도 청년회의 사업실적, 결산, 사업계획, 예산 등)**

1. 사업계획과 예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본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완료 후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국제교류**

본회는 세계농아청년회(WFDYS)의 가입국(YOM)으로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에 속해 있으며 세계농아청년회 총회(WFDYS YGA)와 아시아농아청년회 대표자회의(WFD RSA YS MEETING)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제1절 국제교류**

**제87조(목적)** 국제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8조(대상)**

1. 본회는 세계농아청년회(WFDYS) 및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와 교류하여야 한다.
2. 본회 및 시·도 청년회는 각국 청년회 및 지역 청년회와 교류할 수 있다.
3. 시·도 청년회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파견 및 초청
3. 각국 청년회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4. 그 외에 제8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본회는 제8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0조(사업의 종류)** 국제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세계농아청년회 총회(WFDYS YGA): 세계농아청년회(WFDYS)에서 주최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이며, 한국대표 2명을 파견하여 제10장의 권리로 임원 출마, 캠프 입찰 및 유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2. 아시아농아청년회 대표자회의(WFD RSA YS MEETING):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에서 주최하는 매년 마다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이며, 한국대표 2명으로 파견하여 제10장의 권리로 대표자회의 임원 출마, 캠프 입찰 및 유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3. 캠프
  - 1) 세계농아청소년캠프: 세계 농인 9~12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프
  - 2) 세계농아청소년캠프: 세계 농인 13~17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프
  - 3) 세계농아청년캠프: 세계 농인 18~30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프
  - 4) 아시아농아청년캠프: 아시아 농인 18~3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프

**제2절 참가자 모집 및 선발**

**제91조(참가자 모집 및 선발)**

1. 본회는 세계농아청년회(WFDYS) 및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에서 개최하는 캠프 및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2. 본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참가자 면접)** 면접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면접관을 구성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면접관은 본회 이사회 및 국제자문 중에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면접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참가자를 선발하되, 면접 점수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면접관의 다수결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
3. 면접 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참가자 지원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그 밖에 유치국에서 요구하는 정보 등

**제94조(참가자 자격)** 세계·아시아농아청년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에 시·도 청년회의 정회원인 자
2. 한국수어 및 국제 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3. 세계유소년·청소년캠프에 지원하는 자는 제94조(참가자 자격)의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참가자 자격 상실)**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자동으로 참여 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권한 및 관계가 상실된다.

1.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참가자가 선발되었을 경우
2. 제14조(징계)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 제3절 국제행사 파견

**제96조(국제행사 대표 파견)** 본회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파견하는 대표는 이사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회장 1인과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1인으로 구성해 2인이 참석한다. 단, 회장 유고시 회장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한국수어 및 국제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3. 국제단체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아는 자

**제97조(국제행사 리더 파견)** 세계농아청년회(WFDYS)에서 주최하는 세계농아유소년캠프 및 세계농아청소년 캠프의 리더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도 청년회의 정회원인 자
2. 한국수어 및 국제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3. 국제단체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아는 자

### 제4절 세계농아청년회 및 아시아농아청년회 임원 출마

**제98조(임원 공고 및 선발)**

1. 본회는 세계농아청년회(WFDYS) 및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의 임원에 출마하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2. 본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세계농아청년회(WFDYS) 및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의 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면접과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99조(임원의 면접)**

1. 면접관은 본회 이사회 및 국제자문 중에서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면접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임원을 선발하되, 면접 점수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면접관의 다수결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
3. 면접 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0조(임원의 지원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출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3. 그 밖에 세계농아청년회(WFDYS) 및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에서 요구하는 정보 등

**제101조(임원의 자격)** 세계농아청년회(WFDYS) 및 아시아농아청년회(WFD RSA YS)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도 청년회의 정회원인 자
2. 한국수어 및 국제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3. 국제단체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아는 자

**제102조(임원출마 자격 상실)**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으로 참여 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권한 및 관계가 상실된다.

1.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선발되었을 경우
2. 제14조(징계)에 해당되는 경우

## 제11장 보칙

**제103조(운영규정 공시)** 본회의 운영규정은 문서와 영상으로 보존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104조(운영규정 개정)** 본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한국농아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시·도 청년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도 농아인협회 및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한국농아인협회에 귀속된다. 또, 시·도 청년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도 농아인협회에 귀속된다.

## 부칙

**제107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아인협회 정관과 제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08조(규정 개정 및 시행)**

1.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9조(시행일)**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8일 개정, 시행한다.
3.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7일 개정, 시행한다.
4.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5.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6.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일 개정, 시행한다.
7.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4일 개정, 시행한다.
8.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일 개정, 시행한다.